

대 통 령 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인

2016년 3월 22일

국 무 총 리 황 교 안

국 무 위 원
기 획 재 정 부 장 유 일 호

●대통령령 제27038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채권의 매매”를 “채권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로 한다.

제7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제14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 다만, 법 제3조제1항제16호다목 및 라목의 업무 중 예금업무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업무로 한정한다.

가. 법 제3조제1항제16호다목에 따른 업무의 경우: 다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의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예금업무

나. 법 제3조제1항제16호라목에 따른 업무의 경우: 외국금융기관과의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예금업무

3. 체신관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체신관서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 제14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등”을 각각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매매”를 “매매 및 매매의 중개”로 하며, 같은 호에 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업무

제18조제4항제6호 중 “외국통화의 매매”를 “내국지급수단과 대외지급수단의 매매”로 한다.

제35조제3항제1호가목 중 “환전영업자(개항장 안의 환전영업자는 제외한다) 및 외국환중개회사”를 “외국환중개회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환전영업자(개항장 안의 환전영업자로 한정한다)”를 “환전영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환전영업자(개항장 안의 환전영업자에 한정한다)의 업무제한·업무정지”를 “환전영업자의 등록취소·업무제한·업무정지”로 한다.

1. 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환전업무의 등록과 등록사항 변경 및 폐지의 신고

1의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환전영업자에 대한 감독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

1의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환전영업자에 대한 제21조제9호의 사항에 관한 제한

제37조제3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환전영업자(개항장 안의 환전영업자는 제외한다) 및 외국환중개회사”를 “외국환중개회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제21조제1호·제3호·제8호 및 제9호의 사항”을 “제21조제1호·제3호 및 제8호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환전영업자(개항장 안의 환전영업자는 제외한다) 및 외국환중개회사”를 “외국환중개회사”로 한다. 제40조제2호 중 “50억원”을 “10억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3항·제11항·제12항, 제37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은행총재의 환전영업자에 대한 감독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총재가 환전영업자에 대하여 한 처분은 제35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이 환전영업자에 대하여 한 처분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전영업자가 한국은행총재에 대하여 한 등록 및 신고는 각각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에 대한 등록 및 신고로 본다.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제4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4호 중 “환전영업자 중 개항장안의 환전영업자”를 “환전영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②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51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을 “관세청”으로 한다.

◇개정이유

변화하는 금융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영위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환전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환전영업자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은행, 종합금융회사 및 체신관서 외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의 범위 확대 (제14조제4호)

지금까지는 은행, 종합금융회사 및 체신관서 외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의 범위를 외화채권의 매매, 외화증권의 발행 및 매매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에서 다양한 형태의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환전영업자에 대한 관리·감독권의 일원화(제35조제3항 및 제37조제1항·제3항, 현행 제35조제11항·제12항 삭제)

지금까지는 개항장 안의 환전영업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이, 그 밖의 환전영업자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총재가 관리·감독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환전영업자를 통한 불법거래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환전업무 전반에 대한 등록·관리·감독권을 관세청장으로 일원화함.

다.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시 제재 강화(제40조제2호)

자본거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이 부과되는 금액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함으로써 자본거래 신고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인

2016년 3월 22일

국무총리 황 교 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 윤 식

●대통령령 제27039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호부터 제4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47호까지로 하고, 같은 표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41호(중전의 제4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제46호”를 “제47호”로 한다.

4	서해수호의 날	3월 넷째 금요일	국가보훈처	서해수호를 위한 희생을 기리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북돋우며, 국토 수호 결의를 다지는 행사를 한다.
41	금융의 날	10월 마지막 화요일	금융위원회	금융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금융의 역할과 책임을 되새기며, 금융권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행사를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해수호를 위한 희생을 기리는 행사를 통하여 국민의 안보의식을 북돋우고 국토 수호의 결의를 다질 수 있도록 3월 넷째 금요일을 정부가 주관하는 서해수호의 날로 제정하는 한편,

최근의 금융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금융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금융의 역할과 책임을 되새길 수 있도록 저축의 날을 금융의 날로 기념일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